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회사 내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계속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산재보험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급여(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이 4일 이상인 경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때 산재해 여부 판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된 후 재해조사를 통해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유부 여부를 따져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현물 급여 또는 비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산재요양승인 후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진료비를 직접 지불하게 되며, 만일 부득이하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거나 재해자가 자비를 들여 진료비를 계산하였을 시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불하게 된다.

한편 회사를 이미 퇴사하였을 경우에도 재직 중 발생한 산재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甲에게 제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증도금을 받고 잔금은甲의 형편상 지급기일이 10일 후인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 그런데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바, 지급기일 전에 잔금이행을 최고(催告)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54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모두 지급되면 매수인 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의 잔대금 이행기일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

라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해제권의 발생 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을 도과한 것을 말하며 그 이행기 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고,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민법 제544조, 제153조, 제387조, 1982. 12. 14. 82다카861). 그러므로 귀하는 어음지급기일이 되어만 어음을 지급제시할 수 있고 그 때 甲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선택적으로 약속어음청구를 하거나 그 원인 되는 잔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최고한 후 매매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 3. 28. 72다119).

☞문의:박문우변호사 (031-874-1652)

한·방·상·식

한방내과 전문의 김원찬



우리는 흔히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오늘은 괜히 몸이 무겁고 피곤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체리듬에 따라 몸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 구성원인 사회인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전한 육체와 정신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건강은 인체 내의 모든 장기들이 조화를 잘 이뤄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야 이루어집니다. 바로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손색없이 준비돼 모든 활동을 뒷받침 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을 때에는 병적 요소를 이겨내는 힘도 강하고 나쁜 환경조건에 견뎌내는 힘도 강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쓰지 않고도 절로 낫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 병을 이겨내는 힘, 병을 회복으로 이끄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은 자연치유력 혹은 원기(元氣)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으며 건강한 사람일수록 또 몸이 튼튼할수록 그 힘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기를 어떤 방법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면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건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침범되는데 저항력이 강하고 적응력이 좋을수록 그 흔들리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세균과 같은 병원체 뿐만 아니라 환경조건, 영양상태, 운동과 일, 수면과 휴식 등 일상생활조건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강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건강검진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꼭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한방건강검진은 병이 오기 전의 몸 상태를 알아보는 데 장점이 있어 40대 이후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원정부한방병원(820-7200) www.ujbhanbang.co.kr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이문환



Q 청소년비뇨기과가 따로 있나요?

A 비뇨기과는 뜻밖에도 청소년환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성인층과는 다른 임상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성과 관련한 신경불안증이 많으며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제대로 남자구실을 할 수 있을까'하는 쓸데없는 걱정이나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검사를 통해 성기능에 문제가 없음을 밝혀주거나 자위행위가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만 일깨워주면 불안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문제

는 청소년기에 신체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성인이 된 후 불임이 되는 사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주의해야 할 비뇨기질환으로는 성병 후유증, 정계정맥류, 페니스 폴립 등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행위로 요도염에 감염된 청소년들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전립선염으로, 다시 부고환염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고환에는 직경이 0.5mm도 안되는 가는 관이 열기살기 꼬여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정자를 사정관으로 내보낼 수 없어 불임이 되는 것입니다. 페니스폴립은 자위행위나 신

혼기 성생활에 고통하다 보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 페니스가 한껏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갑자기 체위를 바꾸거나 반대에 가까운 행위를 하면 뜻하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사춘기에 허한 질관이 정계(精系)의 병인데 정계란 고환을 달아매고 있는 새끼손가락만한 줄로 그 안에 수정관, 입과관, 신경 동맥, 정맥 등이 들어 있는 중요부위입니다. 정계열접은 정계가 뒤틀리는 급성질환으로 정계가 꼬이게 되면 고환알맹이가 돌돌 말린채 죽어 가게 되는데 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통증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정계정맥류는 음낭의 내부순환 이상으로 정맥혈관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불임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증상으로서는 몸이 피곤하고 항상 음낭이 빠근하며 응어리진 듯한 느낌을 주며 초기 발견이 쉽지않아 훗날 문제가 되는 것이며 서있는 상태에서 서 아랫배 힘을 주었을 때 한쪽 음낭, 특히 왼쪽 음낭이 더 커보일 경우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경기가정·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정형외과과장 송인권



장마 기간이나 여름철 집중 호우 때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호소한다. 반대로 장마나 집중호우 기간 중간에 햇빛이 나면 훨씬 통증이 덜하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장마철처럼 밖에 나가기 불편할 때도 관절염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병원을 찾기 일쑤다.

비가 올 때 관절염 증상이 더 심해지는 현상에 대해 그동안 여러 의학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가 이뤄졌고 또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기온이 낮을 때, 습도가 높을 때, 그리고 저기압일 때 관절염의 통증이 악화된다는 것만은 사실로 굳

장마철 심해지는 관절염

어지는 분위기다. 여름철에 사용하는 과다한 냉방 기구의 찬 바람 때문에 관절염의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비가 오거나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그만큼 활동량이 줄어 오히려 관절이 뻣뻣해지기 때문으로 해석해 그 대책으

로 실내에서도 꾸준히 움직일 것을 권유한다.

비가 내리면 누구든 야외 활동을 비롯해 전체적인 활동량이 줄게 마련이다. 심지어 병원 응급실에서도 비가 오면 환자가 줄어들 정도라고 말할 정도다.

다만 관절염 환자의 경우 오히려 종종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기도 한다. 관절염 관련 전문의들은 이런 이유를 전체적인 활동량이 줄어들어 관절이 그만큼 움직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습도가 높거나 냉방이 지나치면 '육륙' 쉬시는 뼈마디를 맨손체조·산책 등으로 움직여줘 활동량을 늘려 관절과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비가 올 때는 실내에서 걷기, 수영, 맨손체조 등을 하고 빛이 날 때 가벼운 산책을 해주면 더욱 좋다.(다음호에 이어)

☞문의:포천의료원(031-539-9114)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저는 작년 2월에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왔습니다.

올해 5월에 임주가 시작되어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하였는데 세입자가 사업자 아닌 일반 개인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A 요즘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분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비록 주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양 받은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통상 환급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은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임차

인이 사업자라면 사무실의 임대(과세사업)가 되므로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지금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비록 오피스텔의 임대라 하더라도 올해 2월 18일 이후부터는 주택의 임대(면세사업)로 보도록 국제청에서 예규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임대수입은 면세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오피스텔은 과세용 재화를 면세용 재화로 전용하는 것이 되므로 지금까지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다소 난해하므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02-404-9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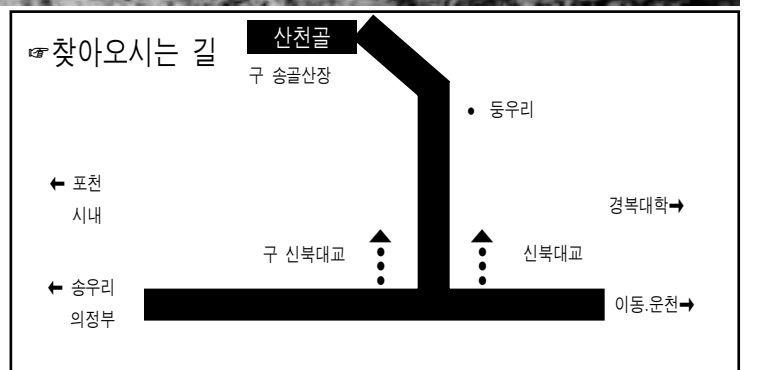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산천골 가든 (구 송골산장)

고객님들께 신선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자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뉴

- 사철탕
- 오리탕
- 토끼탕
- 토종닭
- 삼겹살
- 통개예약



◇ 방가로가 돌보이는 뒷 정원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363 산천골 가든 (구 송골산장) / 예약, 문의전화 : 031) 535-7668 / 대표 : 김점숙